					I-D-3
제목	국문	요양급여계약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Improving Plan of Contracting Medical Pric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저 자 및 소 속	국문	문옥륜, 권순만, 정재훈, 김남순,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영문	OK Ryun Moon, Soonman Kwon, Jae Hoon Jung, Nam Soon Kim, Hongsoo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보장]	발표자	문옥륜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1. 목적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은 2000 년부터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간 계약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제도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지만, 계약 첫해 계약 당사자 상호간 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고, 그 당사자들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요양급여비용계약제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그 구체적인 계약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계약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계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해 보험자가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실제 자료의 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에 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요양급여계약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한다.

2.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계약제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계, 보험자, 소비자, 정부정책담당자와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전문가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계약제 시행방안에 참고하였다.

3. 결과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의료 수가의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투입 비용의 상승분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능력의 증가분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자(소비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목표의료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요양급여비용계약제에서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의료비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와 같은 의료경제지수와 목표의료비를 이용한 의료량조정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환산지수 조정의 주요기준으로서는 가입자 및 공급자는 주로 의료서비스에 투입된 자원의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학자들은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주요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 환산지수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가격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총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한 총의료비용이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면 의료비용 총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개선방안으로예산제도를 통하여 미리 결정된 최적수준의 의료비용 총량만큼만 의료부문으로 재원이 투여되도록 조절함으로써 국가 전체 자원 중 의료부문으로 투여될 수 있는 재정(자원)의 양을 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제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찰

요양급여계약제의 단기 개선방안으로서, 의료 수가의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에 소요되는 투입 비용의 상승분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능력의 증가분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 적절한 것은 목표의료비를 정하고 실제의료비와 비교하여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다. 환산지수 조정의 주요기준으로서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바람직하다.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중장기 개선 방안으로서는 환산지수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가격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총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가격과 양을 모두 고려한 총의료비용이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면 의료비용 총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총액계약제도의 도입에 앞서 의료보험의 급여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전통 및 합의 기구가 필요하고 의료인 조직의 합리성과 대표성이 필요하고 의료의 질관리가 중요하다.
계약제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